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 중 내과분과전문의의 수 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각 항과 같다.

- 1. "전임의"란 수련병원에서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내과전문의를 말한다.
- 2. "수련병원"이란 대한내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- 3. "교육지도자"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내과분과전문의를 말한다.

제 3 조 (수련)

내과전문의로서 내과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내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.

제 4 조 (수련기간)

- 1. 수련기간은 내과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한다.
- 2.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- 3. 수련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(수련)에 따른다.

제 5 조 (전임의 정원)

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 정원은 별표 3 (전임의 정원기준)에 따른다.

제 6 조 (수련목표 및 내용)

1. 수련목표

내과분과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내과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내과분과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.

2. 수련내용은 별표 4 (수련내용)와 같다.

제 7 조 (수련병원장의 권한)

- 1. 수련병원장은 제5조 (전임의 정원)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,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, 감독한다.
- 2.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련병원의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해임할수 있다.

제 8 조 (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임용보고)

- 1.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 상황을 각 분과별로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단, 군의관이나 전공의 추가수련 등으로 수련개시일이 지연된 전임의는 5월 말까지 보고를 완료하여 야 한다.

- 1) 별지 제2호 (당해 연도 분과전임의 명부)
- 2) 별지 제3호 (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)
- 3) 별지 제4호 (당해 연도 교육지도자 명부)
- 4) 별지 제14호 (전임의 수련확인서)
- 2.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 상황을 보고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 - 단,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해당 분과 전임의 정원 배정 시 패널티(차기연도 전임의 정원 50% 삭감)를 부여한다.

제 9 조 (겸직 금지)

- 1. 전임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 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.
- 2. 병역의무 중인 자는 내과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.

제 10 조 (수련병원의 지정)

- 1.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내과책임자는 대한내과학회로 기간 내 별지 제5호 (내과분과전문의 수 련병원 지정 신청서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. 각 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,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, 별지 제6호 (내과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서)를 교부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수련병원의 지정기준)

- 1.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내과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및 기타 인적,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2.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(수련병원 지정기준)와 같다.

제 12 조 (수련병원에 대한 지시, 감독)

대한내과학회는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수련병원의 심사)

분과위원회는 분과관리이사의 명을 받아 매 3년 동안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, 이를 별지 제7호 (내과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실태보고서)에 의하여 분과관리이사에 게 보고하며,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수련병원 지정의 취소)

이사장은 수련병원이 아래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
- 2.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때
- 3.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
- 4. 기간 내 수련병원 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때

제 15 조 (운영세칙)

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6 조 (부칙)

- 1. 본 규칙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.
- 2. 본 규칙 이전에 실시된 수련은 본 규칙에 의해 인정하지 않는다.
- 3. 본 규칙은 1998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4. 본 규칙은 2008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5. 본 규칙은 2011년 3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6. 본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7. 본 규칙은 2020년 9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8. 본 규칙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9. 본 규칙은 2021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10. 본 규칙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